

특허협력조약 (PCT)

1970년 6월 19일 워싱턴에서 체결

1979년 9월 28일 개정

1984년 2월 3일과 2001년 10월 3일 일부 개정



특허협력조약

편집자 주: 특히 협력조약(PCT)의 개정에 관한 상세사항 및 개정 사항의 발효와 경과조치에 관한 국제특허협력동맹 총회(PCT 총회)의 결정사항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PCT 총회의 관련 보고서들을 참조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들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또는 WIPO 웹사이트(www.wipo.int/pct/en/meetings/assemblies/reports.htm)에서 입수 가능하다.

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

1970년 6월 19일 워싱턴에서 체결

1979년 9월 28일 개정

1984년 2월 3일과 2001년 10월 3일 일부 개정

목차

전문

총강

제 1 조 동맹의 설립

제 2 조 정의

제 1 장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제 3 조 국제출원

제 4 조 출원서

제 5 조 발명의 설명

제 6 조 청구범위

제 7 조 도면

제 8 조 우선권 주장

제 9 조 출원인

제 10 조 수리관청

제 11 조 국제출원의 출원일과 효력

제 12 조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사기관으로의 국제출원 송부

제 13 조 지정관청의 국제출원 사본 입수 가능성

제 14 조 국제출원의 특정 결함

제 15 조 국제조사

제 16 조 국제조사기관

제 17 조 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

제 18 조 국제조사보고서

제 19 조 국제사무국에 내는 청구범위 보정서

제 20 조 지정관청으로의 송달

제 21 조 국제공개

제 22 조 지정관청에 내는 사본, 번역문 및 수수료

제 23 조 국내절차의 연기

제 24 조 지정국에서 있을 수 있는 효력 상실

제 25 조 지정관청의 검토

특허협력조약

제 26 조 지정관청에서의 보정 기회

제 27 조 국내요건

제 28 조 지정관청에서의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보정

제 29 조 국제공개의 효과

제 30 조 국제출원의 비밀 유지

제 2 장 국제예비심사

제 31 조 국제예비심사청구

제 32 조 국제예비심사기관

제 33 조 국제예비심사

제 34 조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제 35 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제 36 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송부, 번역 및 송달

제 37 조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

제 38 조 국제예비심사의 비밀 유지

제 39 조 선택관청에 내는 사본, 번역문 및 수수료

제 40 조 국내심사와 기타 처리의 연기

제 41 조 선택관청에서의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보정

제 42 조 선택관청의 국내심사 결과

제 3 장 공통 규정

제 43 조 특정 종류의 보호 추구

제 44 조 두 종류의 보호 추구

제 45 조 지역특허조약

제 46 조 국제출원의 오역

제 47 조 기한

제 48 조 특정 기한의 준수 지연

제 49 조 국제기관에 대하여 업무를 할 권리

특허협력조약

제 4 장 기술 서비스

- 제 50 조 특허 정보 서비스
- 제 51 조 기술원조
- 제 52 조 조약의 기타 조항과의 관계

제 5 장 행정 규정

- 제 53 조 총회
- 제 54 조 집행위원회
- 제 55 조 국제사무국
- 제 56 조 기술협력위원회
- 제 57 조 재정
- 제 58 조 조약규칙

제 6 장 분쟁

- 제 59 조 분쟁

제 7 장 개정

- 제 60 조 조약의 개정
- 제 61 조 조약의 특정 조항의 개정

제 8 장 최종 규정

- 제 62 조 조약 당사국 되기
- 제 63 조 조약의 발효
- 제 64 조 유보
- 제 65 조 점진적 적용
- 제 66 조 폐기
- 제 67 조 서명과 언어
- 제 68 조 기탁 기능
- 제 69 조 통지

특허협력조약

이 조약의 체약국들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고,
발명의 법적 보호를 완벽히 할 것을 희망하고,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으려는 발명의 보호를 받기가 간편하고 더
경제적이 되는 것을 희망하고,
신규 발명을 기재한 문서에 포함된 기술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이 더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고,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필요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접근이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현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여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에서 마련한 국내 또는 지역 법제도의 효율을 높이도록
고안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조성하고 촉진할
것을 희망하고,
국가 간의 협력이 이 목적들의 달성을 크게 촉진할 것을 확신하며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총강

제 1 조 동맹의 설립

(1) 이 조약의 당사국(이하 “체약국”이라 한다)들은 발명의 보호를 받기 위한 출원의 제출, 조사 및 심사에 협력하고 특별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맹을 구성한다. 이 동맹은 국제특허협력동맹이라 한다.

(2)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 국민 또는 거주자의 파리협약상의 권리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정의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약과 조약규칙의 목적상,

(i) “출원”이란 발명의 보호를 위한 출원을 말하며, “출원”이라 할 때는 발명특허, 발명자증, 실용증, 실용신안, 추가특허나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및 추가실용증의 출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ii) “특허”라 할 때는 발명특허, 발명자증, 실용증, 실용신안, 추가특허나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및 추가실용증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iii) “국내특허”란 국내기관이 허여하는 특허를 말한다.

(iv) “지역특허”란 둘 이상의 국가에서 효력을 가진 특허를 허여할 권한이 있는 국내기관 또는 정부간기관이 허여하는 특허를 말한다.

(v) “지역출원”이란 지역특허의 출원을 말한다.

(vi) “국내출원”이라 할 때는 이 조약에 따른 출원 이외의 국내특허와 지역특허의 출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vii) “국제출원”이란 이 조약에 따른 출원을 말한다.

(viii) “출원”이라 할 때는 국제출원과 국내출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ix) “특허”라 할 때는 국내특허와 지역특허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x) “국내법”이라 할 때는 체약국의 국내법, 또는 지역출원이나 지역특허에 관련된 경우에는 지역출원을 하거나 지역특허를 허여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약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xi) “우선일”이란 기한의 계산상 다음을 말한다.

(a) 국제출원이 제 8 조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b) 국제출원이 제 8 조에 따른 복수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신출원의 출원일

(c) 국제출원이 제 8 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의 국제출원일

(xii) “국내관청”이란 특허를 허여하는 임무를 맡은 체약국의 정부기관을 말하며, “국내관청”이라 할 때는 복수의 국가로부터 지역특허를 허여하는 임무를 위임받은 정부간기관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나, 다만 이 국가들 중 적어도 하나의 국가가 체약국이고 이 조약과 조약규칙이 국내관청과 관련하여 정하는 의무를 지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 국가들이 그 정부간기관에 권한을 준 경우에 한한다.

(xiii) “지정관청”이란 이 조약 제 1 장에 따라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의 국내관청 또는 그 국가를 대행하는 국내관청을 말한다.

(xiv) “선택관청”이란 이 조약 제 2 장에 따라 출원인이 선택한 국가의 국내관청 또는 그 국가를 대행하는 국내관청을 말한다.

(xv) “수리관청”이란 국제출원이 제출된 국내관청 또는 정부간기구를 말한다.

(xvi) “동맹”이란 국제특허협력동맹을 말한다.

(xvii) “총회”란 동맹의 총회를 말한다.

(xviii) “기구”란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

(xix) “국제사무국”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을 말하며, 지식재산권보호합동국제사무국(BIRPI)이 존속하는 한 이 사무국을 말한다.

(xx) “사무총장”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하며, 지식재산권보호합동국제사무국이 존속하는 한 이 사무국의 총장을 말한다.

제 1 장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제 3 조 국제출원

(1) 체약국에서 발명의 보호를 받으려는 출원은 이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으로 출원될 수 있다.

(2) 국제출원은 이 조약과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서, 발명의 설명,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요약서는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기타 목적, 특히 청구하는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목적으로는 고려할 수 없다.

(4) 국제출원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 (i) 정해진 언어로 작성
- (ii) 정해진 서식상의 요건 충족
- (iii)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정해진 요건 충족
- (iv) 정해진 수수료 납부

제 4 조 출원서

(1) 출원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i) 국제출원을 이 조약에 따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
- (ii) 국제출원에 기초하여 발명의 보호를 받으려는 하나 또는 복수의 체약국("지정국")의 지정. 지정국에 대하여 지역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출원인이 국내특허 대신 지역특허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역특허에 관한 조약에 따라 출원인이 그 조약의 일부 당사국들로 출원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약의 당사국들 중 하나의 국가를 지정하고 지역특허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하는 것은 그 조약의 모든 당사국을 지정하는 것으로 본다.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국가의 지정으로 지역특허 출원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지정은 그 지역특허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표시로 본다.
- (iii) 출원인과 대리인(있는 경우)의 이름 및 이들에 관한 기타 정해진 정보

(iv) 발명의 명칭

(v) 지정국들 중 적어도 하나의 국가의 국내법이 국내출원 시에 발명자의 이름과 발명자에 관한 기타 정해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자의 이름과 발명자에 관한 기타 정해진 정보. 이와 달리, 지정관청의 국내법이 이 사항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출원의 출원 시점보다 늦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출원서 또는 각 지정관청에 보내는 별도의 통지서에 표시할 수 있다.

(2) 모든 지정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출원인이 제 43 조에 규정된 기타 종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이란 희망하는 발명의 보호가 지정국에 의한 또는 지정국에 대한 특허의 부여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이 항의 목적상, 제 2 조(ii)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발명자의 이름과 발명자에 관한 기타 정해진 정보를 출원서에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지정국의 국내법이 이 사항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출원의 출원 시점보다 늦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국에서 어떠한 영향도 초래되지 아니한다. 별도의 통지서로 위의 표시사항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지정국의 국내법이 그 사항들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국에서 어떠한 영향도 초래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발명의 설명

발명의 설명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완벽하게 발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청구범위

청구항은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한다.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 7 조 도면

(1) 제 2 항(ii)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도면은 발명의 이해에 필요한 경우에 요구된다.

(2) 도면이 발명의 이해에 필요하지 않으나 발명의 성질상 도면을 이용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

(i) 출원인은 이러한 도면을 출원 시의 국제출원에 포함할 수 있다.

(ii) 지정관청은 출원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이러한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우선권 주장

(1) 국제출원은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또는 당사국에 대하여 출원한 하나 이상의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을 포함할 수 있다.

(2)(a) (b)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항에 따라 선언한 우선권 주장의 조건과 효력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스톡홀름의정서 제4조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b) 하나의 체약국에서 또는 체약국에 대하여 출원한 하나 이상의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국제출원은 그 체약국의 지정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지정국에서 또는 지정국에 대하여 출원한 하나 이상의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권이 국제출원에서 주장되는 경우 또는 하나의 국가만 지정한 국제출원의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 그 지정국에서의 우선권 주장의 조건과 효력은 그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제 9 조 출원인

(1) 체약국의 거주자나 국민은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2) 총회는 이 조약의 당사국은 아니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의 거주자와 국민이 국제출원을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거주지와 국적의 개념 및 복수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 또는 출원인이 모든 지정국에 대하여 동일하지 않은 경우의 거주지와 국적의 개념의 적용은 조약규칙에 정한다.

제 10 조 수리관청

국제출원은 정해진 수리관청에 하여야 하며 수리관청은 이 조약과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출원을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 조 국제출원의 출원일과 효력

(1) 수리관청은 국제출원의 수리 시에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면 국제출원의 수리일자를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i) 거주지 또는 국적상의 이유로 출원인이 그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할 권리가 명백히 없지 아니함

(ii) 국제출원이 정해진 언어로 작성되어 있음

(iii) 국제출원이 적어도 다음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a)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b) 적어도 하나의 체약국의 지정

(c) 정해진 바에 따른 출원인의 이름

(d) 의견상 발명의 설명으로 보이는 부분

(e) 의견상 청구범위로 보이는 부분

(2)(a) 수리관청은 국제출원이 제(1)항에 열거된 요건들을 국제출원의 수리 시에 충족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인에게 필요한 보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b) 출원인이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에 수리관청은 필요한 보완서의 수리일자를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제 64 조(4)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항(i) 내지 (iii)에 열거된 요건들을 충족하고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부터 각 지정국에서 정규 국내출원의 효력을 가지며, 그 국제출원일은 각 지정국에서 실제의 출원일로 본다.

(4) 제 1 항(i) 내지 (iii)에 열거된 요건들을 충족하는 국제출원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의미 내에서 정규 국내출원에 해당한다.

제 12 조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사기관으로의 국제출원 송부

(1)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출원의 사본 1 부(수리관청용 사본)는 수리관청이 보관하고 1 부(기록원본)는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다른 1 부(조사용 사본)는 제 16 조에 규정된 관할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기록원본을 국제출원의 정본으로 본다.

(3) 국제사무국이 정해진 기한 내에 기록원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해당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지정관청의 국제출원 사본 입수 가능성

(1) 지정관청은 제 20 조에 규정된 송달 전에 국제출원의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가급적 신속히 그 사본을 그 지정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a) 출원인은 언제든지 국제출원의 사본을 지정관청에 송부할 수 있다.

(b) 출원인은 언제든지 국제출원의 사본을 지정관청에 송부하여 줄 것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은 가급적 신속히 그 사본을 그 지정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c) 국내관청은 (b)호의 규정에 따른 사본을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국제사무국에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에 (b)호는 그 국내관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4 조 국제출원의 특정 결함

(1)(a) 수리관청은 국제출원에 다음 결함들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i) 조약규칙에 규정된 대로 서명되어 있지 아니함
- (ii) 출원인에 관한 정해진 표시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iii) 발명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iv) 요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v) 정해진 서식상의 요건이 조약규칙이 정하는 정도로 충족되어 있지 아니함

(b) 수리관청은 위의 결함들 중 어느 하나라도 발견하는 경우에 출원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국제출원을 보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수리관청은 이를 선언하여야 한다.

(2) 국제출원이 실제로는 그 국제출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면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그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그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리관청이 그 도면을 수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도면의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본다.

(3)(a) 수리관청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 3 조(4)(iv)에 정해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제 4 조(2)에 정해진 수수료가 어느 지정국에 대하여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수리관청은 이를 선언하여야 한다.

(b) 수리관청이 제 4 조(2)에 정해진 수수료가 정해진 기한 내에 하나 이상의 지정국(지정국 모두는 아님)에 대하여 납부되었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수리관청은 이를 선언하여야 한다.

(4) 국제출원에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후 수리관청이 제 11 조(1)(i) 내지 (iii)에 열거된 요건들 중 하나라도 그 국제출원일에 충족되어 있지 않았음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수리관청은 이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 15 조 국제조사

(1) 모든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의 대상이 된다.

(2) 국제조사의 목적은 관련 선행기술을 발견하는 것이다.

(3) 국제조사는 발명의 설명과 도면(있을 경우)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초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제 16 조에 규정된 국제조사기관은 그 기관의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선행기술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어떠한 경우이든 조약규칙에 규정된 문헌을 참고하여야 한다.

(5)(a) 체약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대행하는 국내관청에 국내출원을 하는 출원인은 그 국내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와 유사한 조사(“국제형조사”)를 수행하여 출 것을 그 국내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b) 체약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대행하는 국내관청은 그 국내관청에 출원된 국내출원에 대하여 국제형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c) 국내출원이 국제출원으로서 (a)호 및 (b)호에 언급된 국내관청에 출원된 경우에 국제형조사는 국제조사를 관할하게 될 제 16 조에 규정된 국제조사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국제형조사는 국내출원이 국제조사기관이 처리할 준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 국제출원을 위한 정해진 언어로서 그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출원의 언어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언어로 출원인이 준비한 번역문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국내출원과 번역문(필요한 경우)은 국제출원을 위한 정해진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국제조사기관

(1) 국제조사는 국제조사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며 출원 대상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의 작성 임무를 지닌 국내관청 또는 정부간기구(예를 들면 국제특허기관)가 국제조사기관이 될 수 있다.

(2) 단일 국제조사기관이 확립되기까지 복수의 국제조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각 수리관청은, 제 3 항(b)에 언급된 해당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수리관청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를 관할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국제조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3)(a) 국제조사기관은 총회가 임명하여야 한다. (c)호에 언급된 요건들을 충족하는 국내관청과 정부간기구는 국제조사기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b) 임명은 지정될 국내관청 또는 정부간기구의 동의 및 이러한 국내관청 또는 정부간기구와 국제사무국 사이의 협정의 체결(총회의 승인을 받아)을 조건으로 한다.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특히 국제조사의 모든 공통 규칙을 적용하고 준수한다는 취지의 그 국내관청 또는 정부간기구의 공식 약속을 명기하여야 한다.

(c) 국내관청 또는 정부간기구가 국제조사기관으로 임명될 수 있기 전에 충족하여야 하며 국제조사기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충족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 특히 인력 및 문헌에 관한 요건은 조약규칙에 정한다.

(d) 임명은 일정 기간의 임기를 정해 이루어지며 임기는 연장 가능하다.

(e) 총회는 국내관청 또는 정부간기구의 임명이나 임기의 연장에 관하여 결정하기 전에 또는 그 임기가 만료되도록 두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내관청 또는 정부간기구의 의견을 듣고 제 56 조에 규정된 기술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

제 17 조 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

(1) 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는 이 조약과 조약규칙의 규정 및 국제사무국이 이 조약과 조약규칙에 따라 그 국제조사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2)(a) 국제조사기관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 국제조사기관은 이를 선언하여야 하며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 (i) 국제출원이 국제조사기관이 조약규칙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없는 대상으로서 이러한 특별한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대상에 관한 것임, 또는
- (ii)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의미 있는 조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b) (a)호에 언급된 상황이 일부 청구항들과만 관련된 경우에 국제조사보고서는 그 청구항들에 대하여 위의 사실을 지적하고 기타 청구항들에 대하여는 제 18조에 규정된 대로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a)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이 조약규칙에 규정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추가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제조사기관은 청구범위에 첫 번째 언급된 발명(주발명)과 관련된 국제출원의 부분과, 필요한 추가수수료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된 경우에는 추가수수료가 납부된 발명과 관련된 국제출원의 부분에 관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b) 지정국의 국내법은, 그 지정국의 국내관청이 (a)호에 규정된 국제조사기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국제조사가 수행되지 아니한 국제출원의 부분은, 그 지정국에서의 효력에 관한 한, 출원인이 그 지정국의 국내관청에 특별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 18 조 국제조사보고서

(1) 국제조사보고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신속히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3)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제 17 조(2)(a)에 따른 선언서는 조약규칙에 규정된 대로 번역하여야 한다. 번역문은 국제사무국이 직접 또는 그 책임 하에 준비하여야 한다.

제 19 조 국제사무국에 내는 청구범위 보정서

(1)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국제사무국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국제출원의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가진다. 동시에 출원인은 보정사항을 설명하고 그 보정사항이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진술하는,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략한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보정사항은 출원 시의 국제출원의 개시범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지정국의 국내법이 제(2)항의 개시범위를 넘어서는 보정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그 지정국에서 어떠한 영향도 초래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지정관청으로의 송달

(1)(a) 국제출원은 국제조사보고서(제 17 조(2)(b)에 언급된 지적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제 17 조(2)(a)에 언급된 선언서와 함께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정관청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정관청이 송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송달문서는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선언서의 번역문(정해진 바에 따라)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청구범위가 제 19 조(1)에 따라 보정된 경우에 송달문서는 출원 시의 청구범위 전문과 보정된 청구범위 전문을 포함하거나 출원 시의 청구범위 전문을 포함하고 보정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제 19 조(1)에 언급된 설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명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지정관청 또는 출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은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관청 또는 출원인에게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 21 조 국제공개

(1)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2)(a) (b)호와 제 64 조(3)에 규정된 예외사항을 조건으로, 국제출원의 국제공개는 그 국제출원의 우선일부터 18 개월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b) 출원인은 (a)호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하기 전 어느 때라도 국제출원을 공개하여 줄 것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무국은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3)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제 17 조(2)(a)에 따른 선언서는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국제공개의 언어와 형식 및 기타 세부사항은 조약규칙에 따른다.

(5)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국제공개는 하지 아니한다.

(6)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이 판단하기에 윤리나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도면을 포함하고 있거나 조약규칙에 정의된 비방하는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국제사무국은 그 국제출원의 공개 시 그와 같은 표현, 도면 및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 생략된 단어나 도면의 위치와 개수를 표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생략된 구절들의 각 사본을 제공한다.

제 22 조 지정관청에 내는 사본, 번역문 및 수수료

(1)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늦어도 30¹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각 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제 20 조에 따른 송달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과 번역문(정해진 바에 따라)을 제출하고 국내 수수료(있는 경우)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국의 국내법이 발명자의 이름과 발명자에 관한 기타 정해진 정보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표시사항들을 국내출원의 출원 시점보다 늦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표시사항들이 해당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출원인은 그 지정국의 국내관청이나 그 지정국을 대행하는 국내관청에 우선일부터 30¹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표시사항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제 17 조(2)(a)에 따라 선언하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된 행위의 이행 기한은 제(1)항에 규정된 기한과 같다.

(3) 국내법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의 이행 기한으로서 그 항들에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만료하는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 23 조 국내절차의 연기

(1) 지정관청은 제 22 조에 따른 해당 기한이 만료하기 전에 국제출원을 처리하거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관청은 출원인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어느 때라도 국제출원을 처리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제 24 조 지정국에서 있을 수 있는 효력 상실

(1) 아래 (ii)의 경우에는 제 25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 11 조(3)에 규정된 국제출원의 효력은 다음의 경우 지정국에서의 국내출원 취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 지정국에서 소멸한다.

- (i) 출원인이 국제출원 또는 그 지정국의 지정을 취하하는 경우
- (ii) 국제출원이 제 12 조(3), 제 14 조(1)(b), 제 14 조(3)(a) 또는 제 14 조(4)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그 지정국의 지정이 제 14 조(3)(b)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iii) 출원인이 제 22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해당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1 조(3)에 규정된 효력을 제 25 조(2)에 따라 유지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지정관청은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제 25 조 지정관청의 검토

(1)(a)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일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거나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선언한 경우 또는 국제사무국이 제 12 조(3)에 따른 판단을 내린 경우에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출원인이 명시한 이름의 지정관청에 해당 출원 파일에 있는 서류의 사본을 자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b) 수리관청이 특정 국가의 지정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선언한 경우에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그 국가의 국내관청에 해당 출원 파일에 있는 서류의 사본을 자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c) (a)호 또는 (b)호에 따른 요청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a) (b)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지정관청이 국내수수료(있는 경우)의 납부와 적합한 번역문(정해진 바에 따라)의 제출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제(1)항에 언급된 거부, 선언 또는 판단이 이 조약과 조약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관청이 그 거부 또는 선언이 수리관청의 실수나 누락으로 인한 것이었거나 그 판단이 국제사무국의 실수나 누락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관청은 그 지정관청이 소재하는 국가에서의 해당 국제출원의 효력에 관한 한 이러한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b) 기록원본이 출원인 측의 실수나 누락에 의하여 제 12 조(3)에 정해진 기한이 만료된 후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한 경우에 (a)호의 규정은 제 48 조(2)에 언급된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제 26 조 지정관청에서의 보정 기회

지정관청은 국내출원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국내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제출원을 보정할 기회를 먼저 출원인에게 주지 아니하고서는 이 조약 및 조약규칙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국제출원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7 조 국내요건

(1) 국내법은 국제출원이 그 국제출원의 형식이나 내용에 관하여 이 조약 및 조약규칙이 정하는 요건과는 다른 요건 또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 7 조(2)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제(1)항의 규정으로 국내법이 지정관청에서 국제출원의 처리가 시작된 후에 다음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i)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격을 가지는 임원의 이름

(ii) 국제출원의 일부는 아니나 그 국제출원에서 한 주장이나 진술의 증거가 되는 서류(출원 시에 출원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국제출원에 서명한 경우에는 출원인의 서명으로 그 국제출원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지정국의 목적상,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제출원을 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그 지정관청은 그 국제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4) 지정국의 국내법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이 조약 및 조약규칙이 정하는 요건보다 국제출원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하여 출원인 측에서 보아 더 유리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국의 또는 그 지정국을 대행하는 국내관청, 법원 및 기타 관할 기관은 이 조약 및 조약규칙이 정하는 요건 대신에 그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을 국제출원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이 조약 및 조약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국제출원에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이 조약 및 조약규칙의 어떠한 규정도 각 체약국이 희망하는 바대로 그러한 특허성의 실체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체약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특히, 선행기술의 정의에 관한 이 조약 및 조약규칙의 규정은 오로지 국제절차를 위한 것이며, 따라서 각 체약국은 국제출원에 청구된 발명의 특허성 판단 시에 선행기술 및 출원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요건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기타 특허성의 조건에 관한 국내법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자유를 가진다.

(6) 국내법은 출원인이 그 법에서 정하는 특허성의 실체적인 조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수리관청 또는 지정관청(지정관청에서 국제출원의 처리가 시작된 후에는)은 그 관청에 대하여 출원인을 대표할 권리를 가진 대리인이 출원인을 대표하여야 하는 요건 및/또는 출원인은 통지서를 받기 위한 주소를 그 지정국 내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

(8) 이 조약 및 조약규칙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적용할 자유, 또는 자국의 일반적인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거주자나 국민이 국제출원을 할 권리를 제한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지정관청에서의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보정

(1) 출원인에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각 지정관청에서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보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지정관청은 출원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그러한 기한이 만료하기 전에 특허를 허여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정사항은 출원 시의 국제출원의 개시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정국의 국내법이 보정사항이 이 개시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정은 이 조약 및 조약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4) 지정관청이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 보정서는 그 번역문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29 조 국제공개의 효과

(1) 지정국에서의 출원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한, 지정국에서의 국제출원의 국제공개 효과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출원의 강제 국내공개에 대하여 그 지정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효과와 같다.

(2) 지정국에서 국내법에 따른 공개에 사용되는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국제공개가 되는 경우에 그 국내법은 제(1)항에 정해진 효과는 다음과 같은 때부터만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i) 국내공개에 사용되는 언어의 번역문이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었을 때

(ii) 국내공개에 사용되는 언어의 번역문이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의 열람을 위해 공개되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iii) 출원인이 국제출원에 청구된 발명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국내공개에 사용되는 언어의 번역문을 송부하였을 때

(iv) (i)과 (iii)에 기재된 행위 모두 또는 (ii)와 (iii)에 기재된 행위 모두가 발생하였을 때

(3) 지정국의 국내법은 출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선일부터 18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 제(1)항에 정해진 효과는 우선일부터 18 개월이 경과한 때부터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4) 지정국의 국내법은 제(1)항에 정해진 효과는 제 21 조에 따라 공개된 국제출원의 사본을 그 지정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지정국을 대행하는 국내관청이 받은 날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 국내관청은 해당 관청의 공보에 그 수리일을 가능한 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 30 조 국제출원의 비밀 유지

(1)(a) (b)호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사무국 및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의 국제공개 전에는 출원인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사람이나 기관에게도 그 국제출원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b) (a)호의 규정은 관할 국제조사기관으로의 송부, 제 13 조에 따른 송부 및 제 20 조에 따른 송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a) 국내관청은 다음 중 가장 빠른 날 이전에는 출원인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는 제 3 자가 국제출원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i) 국제출원의 국제공개일
- (ii) 제 20 조에 따른 국제출원의 송달문서를 받은 날
- (iii) 제 22 조에 따른 국제출원의 사본을 받은 날

(b) (a)호의 규정으로 국내관청이 그 국내관청이 지정관청으로 지정된 사실을 제 3 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알림이나 공개는 어느 수리관청에 출원되었는지와, 출원인의 이름, 국제출원일, 국제출원번호 및 발명의 명칭만을 포함할 수 있다.

(c) (a)호의 규정으로 지정관청이 사법기관을 위하여 국제출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제 2 항(a)의 규정은 제 12 조(1)에 따른 송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리관청에 적용되어야 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접근(access)”이란 용어는 제 3 자가 인지할 수 있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말하며, 개별 송달과 일반 공개를 포함한다. 다만, 국내관청은 국제공개 전에는, 또는 우선일부터 20 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국제공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우선일부터 20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국제출원이나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 2 장 국제예비심사

제 31 조 국제예비심사청구

(1) 국제출원은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에 의하여 다음의 규정 및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된다.

(2)(a) 출원인이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제 2 장에 구속되는 체약국의 거주자나 국민이고 그러한 체약국의 수리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대행하는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b) 총회는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조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 2 장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거주자나 국민인 경우에도 그 사람의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허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국제예비심사청구는 국제출원과 별도로 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정해진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해진 언어와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a)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 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체약국(선택국)을 표시하여야 한다. 추후 체약국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대상은 제 4 조에 따라 이미 지정된 체약국에 한정될 수 있다.

(b) 제 2 항(a)에 언급된 출원인은 제 2 장에 구속되는 어느 체약국이나 선택할 수 있다. 제 2 항(b)에 언급된 출원인은 제 2 장에 구속되는 체약국으로서 그러한 출원인에 의하여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 체약국만을 선택할 수 있다.

(5)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a)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 32 조에 규정된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추후 선택은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각 선택관청은 선택관청으로 선택받은 사실을 통지받는다.

제 32 조 국제예비심사기관

(1)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제 31 조(2)(a)에 언급된 국제예비심사청구의 경우에 수리관청은, 그리고 제 31 조(2)(b)에 언급된 국제예비심사청구의 경우에 총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국제사무국 간의 적용 가능한 협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관할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국제예비심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제 16 조(3)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33 조 국제예비심사

(1)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은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이다.

(2)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상, 청구된 발명은 조약규칙에 정의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상, 청구된 발명은 조약규칙에 정의된 선행기술을 고려하여도 정해진 기준일에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자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상, 청구된 발명은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어떠한 산업분야에서든 (기술적인 의미에서) 제조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것인 경우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산업”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서와 같이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5) 위에 기재된 기준들은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으로만 적합하다. 체약국은 청구된 발명이 그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준 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6)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문헌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국제예비심사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떠한 추가 문헌이라도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 34 조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1)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는 이 조약과 조약규칙의 규정 및 국제사무국이 이 조약과 조약규칙에 따라 그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2)(a) 출원인은 구두와 서면으로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b)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보정할 권리를 가진다. 보정사항은 출원 시의 국제출원의 개시범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허협력조약

(c)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견해서를 받는다.

- (i) 발명이 제 33 조(1)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
- (ii) 국제출원이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검토하는 범위 내에서 이 조약과 조약규칙의 요건들을 충족할 것
- (iii) 제 35 조(2)의 마지막 문장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의도가 없을 것

(d) 출원인은 견해서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3)(a)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이 조약규칙이 정하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여기는 경우에 출원인에게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추가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선택국의 국내법은, 출원인이 (a)호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 그 선택국에서의 효과에 관한 한, 출원인이 그 선택국의 국내관청에 특별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한의 결과로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제출원의 부분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수 있다.

(c) 출원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a)호에 언급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 중 주발명으로 보이는 발명에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선택국의 국내법은 그 선택국의 국내관청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요구가 정당함을 인정하는 경우에 주발명에 관련되지 않은 국제출원의 부분은, 그 선택국에서의 효과에 관한 한, 출원인이 그 국내관청에 특별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수 있다.

(4)(a) 국제예비심사기관이

- (i) 국제출원이 조약규칙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는 대상에 관한 것으로,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 (ii)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너무 불명료하거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너무 불충분하게 뒷받침되어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의미 있는 견해를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제 33 조(1)에 언급된 질문들을 논의하지 아니하며 출원인에게 이러한 견해와 그에 대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b) (a)호에 언급된 상황이 일부 청구항에만 존재하거나 일부 청구항과만 관련된 경우에 (a)호의 규정은 그 일부 청구항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제 35 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1)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청구된 발명이 어떠한 국내법에 따라서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의 여부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보이는지의 여부 문제에 관한 어떠한 진술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각 청구항과 관련하여 그 청구항이 국제예비심사를 위하여 제 33 조(1) 내지 (4)에 규정된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이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그 진술은 기재된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문헌들의 인용 및 그 경우의 상황에 필요할 수도 있는 설명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 진술은 또한 조약규칙이 정하는 기타 의견들을 수반하여야 한다.

(3)(a)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시 제 34 조(4)(a)에 언급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이러한 견해와 그에 대한 이유를 진술하여야 한다. 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견해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제 34 조(4)(b)에 따른 상황이 존재함이 발견되는 경우에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문제의 청구항들에 대하여 (a)호에 규정된 견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 청구항들에 대하여는 제(2)항에 규정된 견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 36 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송부, 번역 및 송달

(1)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정해진 부속서류와 함께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2)(a) 국제예비심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는 정해진 언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b)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번역문은 국제사무국이 직접 또는 국제사무국의 책임 하에 준비하여야 하며, 부속서류의 번역문은 출원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3)(a)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정해진 번역문 및 원어로 된 부속서류와 함께 국제사무국이 각 선택관청에 송달하여야 한다.

(b) 부속서류의 정해진 번역문은 출원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선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제 20 조(3)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되어 있으나 국제조사보고서에는 인용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의 사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37 조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

(1) 출원인은 일부 또는 모든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2) 모든 선택국의 선택이 취하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a) 모든 취하는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b) 국제사무국은 관련 선택관청 및 관련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a) (b)호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예비심사청구나 체약국 선택의 취하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그 체약국에 있어서는 국제출원의 취하로 본다.

(b) 국제예비심사청구나 선택의 취하는 그러한 취하가 제 22 조에 따른 적용 기한의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취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관청이 위의 기한 내에 국제출원의 사본, 정해진 번역문 및 국내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만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국내법에 정할 수 있다.

제 38 조 국제예비심사의 비밀 유지

(1) 국제사무국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출원인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는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사람이나 기관(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된 후에는 선택관청은 제외)에게도 국제예비심사의 서류에 제 30 조(4)(단서를 포함)에 정의된 의미에서의 접근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의 제(1)항, 제 36 조(1)과 (3) 및 제 37 조(3)(b)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사무국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출원인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발행 여부와 국제예비심사청구나 선택의 취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39 조 선택관청에 내는 사본, 번역문 및 수수료

(1)(a) 체약국의 선택이 우선일부터 19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제 22 조의 규정은 그 체약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30 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각 선택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제 20 조에 따른 송달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과 그 번역문(정해진 바에 따라)을 제출하고, 국내 수수료(해당하는 경우)를 지불하여야 한다.

(b) 국내법은 (a)호에 언급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a)호에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만료되는 기한을 정할 수 있다.

(2) 제 11 조(3)에 정해진 효력은 출원인이 제 1 항(a)에 언급된 행위를 제 1 항(a) 또는 (b)에 따른 적용 가능한 기한 내에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택국에서의 국내출원 취하와 마찬가지로 그 선택국에서 소멸한다.

(3) 선택관청은 출원인이 제 1 항(a) 또는 (b)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 11 조(3)에 정해진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 40 조 국내심사와 기타 처리의 연기

(1) 체약국의 선택이 우선일부터 19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제 23 조의 규정은 그 체약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대행하는 국내관청은, 제(2)항의

특허협력조약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 39 조에 따른 적용 기한의 만료 전에 국제출원의 심사 및 기타 처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택관청은 출원인의 명시적 요청에 의하여 국제출원의 심사 및 기타 처리를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다.

제 41 조

선택관청에서의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보정

(1) 출원인에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각 선택관청에서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보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선택관청은 출원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그러한 기한이 만료하기 전에 특허를 혀여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정사항은 출원 시의 국제출원의 개시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택국의 국내법이 보정사항이 그러한 개시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정은 이 조약 및 조약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선택국의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4) 선택관청이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 보정서는 그 번역문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42 조

선택관청의 국내심사 결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는 선택관청은 동일한 국제출원에 관한 다른 선택관청에서의 심사와 관련된 서류의 사본이나 서류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공통 규정

제 43 조 특정 종류의 보호 추구

발명자증, 실용증, 실용신안, 추가특허나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주는 것을 국내법에 정하고 있는 지정국이나 선택국의 경우에 출원인은 자신의 국제출원이 그 지정국이나 선택국에 관한 한 특허가 아닌 발명자증, 실용증 또는 실용신안을 받기 위한 것임을, 또는 그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이 추가특허나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이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효력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이 조 및 이 조에 따른 규칙에 대하여 제 2 조(ii)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4 조 두 종류의 보호 추구

특허 또는 제 43 조에 언급된 다른 종류의 보호들 중 하나를 받기 위한 출원이 동시에 상기 종류의 보호들 중 또 다른 하나를 받고자 하는 것을 국내법으로 허용하는 지정국이나 선택국에 대하여 출원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두 종류의 보호를 조약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효력은 출원인의 표시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이 조에 대하여 제 2 조(ii)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5 조 지역특허조약

(1) 지역특허를 주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약(지역특허조약)으로서 제 9 조에 따라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지역특허의 출원을 할 자격을 주고 있는 모든 조약은 그 지역특허조약과 이 조약 둘 다의 당사국인 국가를 지정하거나 선택하는 국제출원을 그러한 지역특허의 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2) 위에 언급된 지정국이나 선택국의 국내법은 국제출원에서 그러한 지정국이나 선택국을 지정하거나 선택하는 것은 그 지역특허조약에 따른 지역특허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표시의 효과를 갖는다고 정할 수 있다.

제 46 조 국제출원의 오역

국제출원의 오역으로 인하여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허여한 특허의 범위가 원어로 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체약국의 관할 기관은 그에 맞게 소급하여 그 특허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며, 그 특허의 범위가 원어로 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다.

제 47 조 기한

(1) 이 조약에 언급된 기한들의 계산을 위한 세부사항은 조약규칙에 따른다.

(2)(a) 이 조약의 제 1 장 및 제 2 장에 정해진 모든 기한은 제 60 조에 따른 개정 이외에는 체약국들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b) 그러한 결정은 총회에서 또는 통신에 의한 투표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c) 그 절차의 세부사항은 조약규칙에 따른다.

제 48 조 특정 기한의 준수 지연

(1) 이 조약 또는 조약규칙에 정해진 기한이 우편업무의 중단 또는 우편물의 피할 수 없는 분실이나 지연으로 인하여 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약규칙에 정해진 경우이고 조약규칙에 정해진 입증과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기한은 준수된 것으로 본다.

(2)(a) 체약국은, 자국에 관한 한, 국내법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한 어떠한 기한의 준수 지연도 용인하여야 한다.

(b) 체약국은, 자국에 관한 한, (a)호에 언급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어떠한 기한의 준수 지연도 용인할 수 있다.

제 49 조 국제기관에 대하여 업무를 할 권리

국제출원이 출원된 국내관청에 대하여 업무를 할 권리를 가지는 변호사, 변리사, 또는 기타의 사람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사무국,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도 업무를 할 자격을 가진다.

제 4 장 기술 서비스

제 50 조 특허 정보 서비스

(1) 국제사무국은 공개된 문서(주로 특허 및 공개된 출원)에 기초하여 국제사무국이 입수할 수 있는 기술 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 조에서 “정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2) 국제사무국은 직접, 또는 국제사무국이 협정을 맺을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국제조사기관이나 기타 국내 또는 국제 전문 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정보 서비스는 특히 개발도상국 체약국이 기술 지식과 기술(입수 가능한 공개 노하우를 포함한다)을 획득하는 것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4) 정보 서비스는 체약국의 정부 및 체약국의 국민과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다. 총회는 이 정보 서비스를 다른 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5)(a) 체약국의 정부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비로 제공한다. 다만, 그 정부가 개발도상국 체약국의 정부일 때 그 정부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비와의 차액을 체약국의 정부 이외의 다른 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얻은 이익이나 제 51 조(4)에 언급된 재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비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한다.

(b) (a)호에 언급된 실비는 국내관청의 서비스 수행이나 국제조사기관의 임무 수행에 보통 따르는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이 조의 규정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정 및 총회가 이 목적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실무단이 총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른다.

(7) 총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5)항에 언급된 자금 제공 방법을 보완하는 자금 제공 방법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 51 조 기술원조

(1) 총회는 기술원조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a) 이 위원회의 구성국은 개발도상국들이 대표될 수 있도록 타당한 고려를 하여 체약국들 중에서 선출한다.

(b) 사무총장은 스스로 또는 이 위원회의 요청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에 관여하는 정부간기구의 대표에게 이 위원회의 업무에 참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a) 이 위원회의 임무는 개발도상국 체약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자국의 특허제도를 발전시키도록 기술원조를 조직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b) 기술원조는 다른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훈련과 과견 및 시범과 운영 목적을 위한 장비의 제공을 포함한다.

(4) 국제사무국은 이 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국제금융기구와 정부간기구, 특히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기구 및 기술원조에 관여하는 국제연합 관련 전문기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원조를 받는 국가의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이 조의 규정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정 및 총회가 이 목적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실무단이 총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른다.

제 52 조 조약의 기타 조항과의 관계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 조약의 다른 장들에 포함된 재정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한 재정 규정은 이 장의 규정 및 이 장의 규정의 이행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행정 규정

제 53 조 총회

(1)(a) 총회는 제 57 조(8)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국들로 구성된다.

(b) 각 체약국의 정부는 1 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2)(a) 총회는

- (i) 동맹의 유지 및 발전과 이 조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 (ii) 이 조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총회에 특별히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iii) 국제사무국에 개정회의의 준비에 관한 지시를 한다.
 - (iv) 동맹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활동을 검토 및 승인하며, 사무총장에게 동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필요한 모든 지침을 준다.
 - (v) 제(9)항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와 활동을 검토 및 승인하며, 집행위원회에 지침을 준다.
 - (vi) 동맹의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3년 단위² 예산을 채택하며 결산을 승인한다.
 - (vii) 동맹의 재정 규칙을 채택한다.
 - (viii) 동맹의 목적 달성을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위원회와 실무단을 설치한다.
 - (ix) 어느 비체약국을, 그리고 제(8)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국제기구를 총회의 회의에 참관인으로 입회시킬지를 결정한다.
 - (x) 동맹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기타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이 조약에 따른 적합한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 (b) 총회는 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동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결정한다.
- (3) 대표는 하나의 국가만을 대표하며 그 국가의 이름으로만 투표할 수 있다.
- (4) 각 체약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 (5)(a) 의사정족수는 체약국의 2분의 1로 한다.
- (b)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총회가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총회의 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모든 결정은 조약규칙에 정해진 통신투표로 의사정족수와 필요한 다수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6)(a) 제 47 조(2)(b), 제 58 조(2)(b), 제 58 조(3), 및 제 61 조(2)(b)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의 결정은 실제 투표수의 3 분의 2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

(b)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7) 제 2 장의 규정에 구속되는 국가에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체약국이라 함은 제 2 장의 규정에 구속되는 국가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8)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임명된 정부간기구는 총회에 참관인으로 입회한다.

(9) 체약국의 수가 40 개국을 초과하는 경우에 총회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집행위원회라 함은 그러한 집행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집행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0) 집행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총회가, 사업계획 및 3 년 단위³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총장이 마련한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한다.

(11)(a) 총회는 역년으로 2 년마다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정기회기에서 회합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의 일반총회(General Assembly)와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회합한다.

(b)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요청 또는 체약국의 4 분의 1 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임시회기에서 회합한다.

(12) 총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제 54 조 집행위원회

(1) 총회가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그 집행위원회는 아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a) 집행위원회는, 제 57 조(8)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의 회원국들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 국가들로 구성된다.

(b)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 정부는 1 명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3) 집행위원회 회원국의 수는 총회 회원국 수의 4 분의 1 에 상응하여야 한다. 채워야 할 의석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4 로 나눈 나머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총회는 집행위원회 회원국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a)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의 임기는 그 회원국을 선출한 총회의 회기 종료 시부터 총회의 다음 정기회기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b) 집행위원회 회원국은 최대 3 분의 2 까지만 재선될 수 있다.

(c) 총회는 집행위원회 회원국의 선출과 가능한 재선에 관한 규칙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6)(a) 집행위원회는

(i) 총회의 의제 초안을 준비한다.

(ii) 사무총장이 준비한 동맹의 사업계획 초안과 2년 단위 예산에 관하여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iii) [삭제]

(iv) 사무총장의 정기보고서와 연간 회계감사보고서를 적절한 의견을 붙여 총회에 제출한다.

(v)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총회의 두 정기회기 사이에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에 의한 동맹의 사업계획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vi) 이 조약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부여되는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b) 집행위원회는 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동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결정한다.

(7)(a) 집행위원회는 1년에 1회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정기회기에서 회합하며, 기구의 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회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집행위원회는 사무총장 스스로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장이나 회원국 4분의 1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임시회기에서 회합한다.

(8)(a)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b) 의사정족수는 집행위원회 회원국 수의 2분의 1이다.

(c) 결정은 실제 투표수의 단순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d)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e) 대표는 하나의 국가만을 대표하며 그 국가의 이름으로만 투표할 수 있다.

특허협력조약

(9)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닌 체약국 및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임명된 정부간기구는 집행위원회의 회의에 참관인으로 입회한다.

(10) 집행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제 55 조 국제사무국

(1) 동맹에 관한 행정 업무는 국제사무국이 수행한다.

(2) 국제사무국은 동맹의 여러 기관의 사무국을 제공한다.

(3) 사무총장은 동맹의 최고 운영 책임자이며 동맹을 대표한다.

(4) 국제사무국은 공보 및 조약규칙이 정하거나 총회가 요구하는 기타 간행물을 발행한다.

(5) 국제사무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이 조약에 따른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관청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조약규칙에 정한다.

(6)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직원은 총회, 집행위원회 및 이 조약이나 조약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기타 위원회나 실무단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한다.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1 명의 직원은 이러한 조직들의 당연직 서기가 된다.

(7)(a)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정회의를 위한 준비를 한다.

(b) 국제사무국은 개정회의를 위한 준비에 관하여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간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c)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자는 개정회의의 토론에 투표권 없이 참여한다.

(8) 국제사무국은 부여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 56 조 기술협력위원회

(1) 총회는 기술협력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2)(a) 총회는 개발도상국들이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회 회원들을 임명한다.

(b)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위원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그러한 기관이 체약국의 국내관청인 경우에 그 체약국은 위원회에서 중복하여 대표를 낼 수 없다.

(c) 체약국의 수가 허용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원의 총수는 당연직 회원 수의 두 배보다 많아야 한다.

(d) 사무총장은 스스로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관련 기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토의에 그 관련 기구의 대표를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3) 위원회는 조언이나 권고를 통하여 다음 사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i)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꾸준한 개선

(ii) 둘 이상의 국제조사기관과 둘 이상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기관들의 문서작업 및 업무방법에 있어서의 최대한의 통일성의 확보 및 그 기관들의 보고서의 최대한 균일하게 높은 품질의 확보, 및

(iii) 총회나 집행위원회의 선도로 단일 국제조사기관의 확립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의 해결

(4) 체약국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기구는 위원회의 권한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또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총회, 집행위원회, 전체 또는 일부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 및 전체 또는 일부 수리관청에게 조언과 권고를 할 수 있다.

(6)(a) 어떠한 경우에도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모든 조언문과 권고문을 집행위원회에 송부한다. 사무총장은 그러한 조언문과 권고문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b)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언, 권고, 또는 기타 활동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권한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보고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언문, 권고문 및 보고서를 적절한 의견을 붙여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7) 집행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제(6)항에서 집행위원회라 함은 총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8) 위원회 절차의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57 조 재정

(1)(a) 동맹은 예산을 가진다.

(b) 동맹의 예산은 동맹의 고유 수입과 경비 및 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동맹들의 공동경비 예산에 대한 동맹의 분담금을 포함한다.

(c) 동맹뿐만 아니라, 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다른 동맹들에도 귀속될 수 있는 경비는 동맹들의 공동경비로 간주한다. 공동경비 중 동맹의 분담은 공동경비 중 동맹이 차지하는 권익에 비례한다.

(2) 동맹의 예산은 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동맹들의 예산들과의 조정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맹의 예산은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i) 동맹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

(ii) 동맹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이 발행하는 간행물의 판매대금 또는 사용료

(iii) 중여, 유증 및 보조금

(iv) 임대료, 이자 및 기타 잡수입

(4) 국제사무국에 내야 하는 수수료와 요금의 액수 및 국제사무국의 간행물의 가격은 보통의 경우 이 조약의 운영에 관련된 국제사무국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에 충분하도록 정한다.

(5)(a) 회계연도가 적자로 종료되면 체약국은, (b)호 및 (c)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분담금을 납부한다.

(b) 각 체약국의 분담금액은 해당 연도의 각 체약국으로부터 나온 국제출원의 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총회가 정한다.

(c) 적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메울 다른 수단이 확보되는 경우에 총회는 그러한 적자를 이월하고 체약국에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d) 동맹의 재정 상태가 허용하는 경우에 총회는 (a)호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이 이를 납부한 체약국에 환불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e) (b)호에 따른 분담금을 총회가 정하는 납부기일부터 2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약국은 동맹의 어느 기관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납부의 연체가 예외적이며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동맹의 기관은 그러한 체약국이 그 기관에서 계속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6) 새로운 회계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산이 채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예산은 재정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7)(a) 동맹은 각 체약국이 내는 1회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운용자금을 가진다. 운용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총회는 증액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운용자금의 일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환불한다.

(b) 운용자금에 대한 각 체약국의 최초 납부 금액 및 운용자금의 증액 중 각 체약국의 분담금은 제(5)항(b)에 정해진 원칙과 유사한 원칙에 의거하여 총회가 정한다.

(c) 납부조건은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정하되,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총회가 정한다.

(d) 환불액은 각 체약국이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되, 그 금액의 납부일을 고려한다.

(8)(a) 자국 영역 내에 기구의 본부가 소재하는 국가와 체결하는 본부협정은 운용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러한 국가가 선납하도록 규정한다. 선납 금액과 조건은 사안별로 그러한 국가와 기구 간의 별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한 국가에게 선납의 의무가 존재하는 한, 그 국가는 총회와 집행위원회에 당연직 의석을 가진다.

(b) (a)호에 언급된 국가 및 기구는 각각 서면통지에 의하여 선납할 의무를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폐기는 통지가 이루어진 연도 말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9) 회계감사는 재정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체약국 또는 외부 감사인이 한다. 이들은 총회가 이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명한다.

제 58 조 조약규칙

(1) 이 조약에 부속된 조약규칙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규칙을 둔다.

(i) 이 조약이 명시적으로 조약규칙을 인용하는 사항 또는 조약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ii) 행정 요건, 사항 또는 절차
- (iii) 이 조약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유용한 세부사항

(2)(a) 총회는 조약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b)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개정은 실제 투표수의 4분의 3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

(3)(a) 조약규칙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개정할 수 있는 규칙을 둔다.

- (i) 만장일치의 동의의 경우, 또는

(ii) 자국의 국내관청이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하는 체약국들 중 어느 체약국도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러한 기관이 정부간기구인 경우에는 그 정부간기구의 관할 조직 내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그 정부간기구의 회원국인 체약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b) 그러한 규칙을 적용 가능한 요건으로부터 장래를 위해 삭제하기 위하여는 (a)호(i) 또는 (ii)에 언급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c) 어떠한 규칙을 장래를 위해 (a)호에 언급된 요건에 추가하기 위하여는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조약규칙은 사무총장이 총회의 통제하에 시행세칙을 수립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한다.

(5) 이 조약의 규정과 조약규칙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 6 장 분쟁

제 59 조 분쟁

제 64 조(5)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약이나 조약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이상의 체약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체약국들이 다른 해결 방법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체약국들 중 어느 하나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신청함으로써 그 분쟁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분쟁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체약국은 국제사무국에 알려야 하며, 국제사무국은 다른 체약국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7 장 개정

제 60 조 조약의 개정

- (1) 이 조약은 체약국들의 특별회의에 의하여 때때로 개정할 수 있다.
- (2) 개정회의의 소집은 총회가 결정한다.
- (3)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임명된 정부간기구는 개정회의에 참관인으로 입회하는 것이 허용된다.
- (4) 제 53 조(5), (9) 및 (11), 제 54 조, 제 55 조(4) 내지 (8), 제 56 조, 및 제 57 조의 규정은 개정회의에 의하여, 또는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제 61 조 조약의 특정 조항의 개정

- (1)(a) 제 53 조(5), (9) 및 (11), 제 54 조, 제 55 조(4) 내지 (8), 제 56 조 및 제 57 조의 개정에 대한 제안은 총회 회원국, 집행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
 - (b) (a)호의 제안은 늦어도 총회 심의 6 개월 전까지 사무총장이 체약국들에 송달한다.
- (2)(a) 항에 언급된 조항의 개정은 총회가 채택한다.
 - (b) 채택은 실제 투표수의 4 분의 3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
- (3)(a) 제(1)항에 언급된 조항의 개정은 사무총장이 그 개정이 채택된 때에 총회 회원국들의 4 분의 3 으로부터 각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른 수락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후 발효된다.
 - (b) 이와 같이 수락된 조항의 개정은 그 개정이 발효되는 때에 총회 회원국인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다만, 체약국의 재정 의무를 증가시키는 개정은 그 개정을 수락한다고 통지한 체약국만을 구속한다.
 - (c) (a)호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개정은 (a)호의 규정에 따른 개정의 발효일 후에 총회 회원국이 되는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제 8 장 최종 규정

제 62 조 조약 당사국 되기

(1)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의 회원국은 다음에 의하여 이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i) 서명 후 비준서 기탁, 또는
- (ii) 가입서 기탁

(2) 비준서나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3)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스톡홀름의정서 제 24 조의 규정은 이 조약에 적용된다.

(4) 제(3)항은 그 항에 따라 어느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에 의해 이 조약을 적용할 수 있게 한 영토에 관한 실제 상황을 승인하거나 목시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63 조 조약의 발효

(1)(a)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약은 8 개 국가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 개월 후에 발효된다. 다만, 8 개 국가 중 적어도 4 개 국가가 각각 다음의 조건들 중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i) 그 국가에 출원한 출원의 수가 국제사무국이 공표한 가장 최근의 연간통계상 4 만 건 초과

(ii) 그 국가의 국민이나 거주자가 하나의 외국에 출원한 출원의 수가 국제사무국이 공표한 가장 최근의 연간통계상 1 천 건 이상

(iii) 그 국가의 국내관청이 외국의 국민이나 거주자로부터 받은 출원의 수가 국제사무국이 공표한 가장 최근의 연간통계상 1 만 건 이상

(b) 이 항의 목적상, “출원”은 실용신안의 출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 3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항에 따라 발효될 때에 이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는 국가는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 개월 후에 이 조약에 구속된다.

(3) 그러나 제 2 장의 규정 및 이 조약에 부속된 조약규칙의 그에 상응하는 규정은, 제(1)항에 명시된 세 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3 개의 국가가 제 2 장의 규정에 구속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제 64 조(1)에 규정된 대로, 선언하지 아니하고 이 조약의 당사국이 된 날부터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그 날은 제(1)항에 따른 최초의 발효일 전이 아니어야 한다.

제 64 조 유보⁴

(1)(a) 어느 국가든 제 2 장의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b) (a)호에 따라 선언을 하는 국가는 제 2 장의 규정 및 조약규칙의 그에 상응하는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2)(a) 제 1 항(a)에 따라 선언을 하지 아니한 국가는 아래 사항을 선언할 수 있다.

(i) 국제출원의 사본과 정해진 번역문의 제출에 관하여 제 39 조(1)의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것

(ii) 제 40 조에 규정된 국내절차를 연기할 의무로 인하여 자국의 국내관청이 또는 국내관청을 통하여 국제출원 또는 그 출원의 번역문을 공개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는 것. 다만, 그 의무가 제 30 조 및 제 38 조에 규정된 제한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b) 그러한 선언을 하는 국가는 이에 따라 구속된다.

(3)(a) 어느 국가도, 자국에 관한 한, 국제출원을 국제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

(b) 우선일부터 18 개월이 경과한 때에 국제출원이 (a)호에 따라 선언을 한 국가만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국제출원은 제 21 조(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c) (b)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일지라도 국제사무국은

(i) 출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약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국제출원을 공개한다.

(ii) 국제출원에 기초한 특허나 국내출원이 (a)호에 따라 선언을 한 지정국의 국내관청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관청을 대신하여 공개되는 때에는 그 공개 후 지체 없이 그 국제출원을 공개한다. 다만, 우선일부터 18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a) 자국의 국내법이 자국 특허의 공개 전 어느 일자부터의 선행기술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여 주장되는 우선일을 선행기술 목적상 자국에서의 실제의 출원일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하는 국가는 자국을 지정하는 타국에서의 국제출원을 선행기술의 목적상 자국에서의 실제의 출원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b) (a)호에 따른 선언을 하는 국가는 그 범위 내에서 제 11 조(3)의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c) (a)호에 따른 선언을 하는 국가는 그 선언을 할 때, 자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이 자국에서 선행기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날과 이를 위한 조건을 서면으로 진술한다. 이 진술은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통지서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5) 각국은 자국이 제 59 조에 구속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을 한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는 제 59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a) 이 조에 따른 모든 선언은 서면으로 한다. 선언은 이 조약의 서명 시,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 시, 또는 제(5)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통지서에 의하여 그 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통지서에 의한 선언은 사무총장이 그 통지서를 받은 지 6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6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이 조에 따른 선언은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통지서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사무총장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제(3)항에 따른 선언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상기 3 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유보를 제외하고는 이 조약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65 조 점진적 적용

(1)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과의 협정이 그러한 기관이 처리를 담당하는 국제출원의 수 또는 종류에 대한 제한을 과도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회는 특정 범주의 국제출원에 대한 이 조약 및

특허협력조약

조약규칙의 점진적 적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항은 제 15 조(5)에 따른 국제형조사의 청구에도 적용된다.

(2) 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일자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를 정한다. 이들 일자는 각각 제 63 조(1)의 규정에 따라 이 조약이 발효된 후 6 개월 이내, 또는 제 63 조(3)에 따라 제 2 장이 적용 가능하게 된 후 6 개월 이내의 일자로 한다.

제 66 조 폐기

(1) 체약국은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통지서에 의하여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이 그 통지서를 받은 지 6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폐기는, 상기 6 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국제출원이 출원되고, 폐기국이 선택된 경우 폐기국의 선택이 상기 6 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폐기국에서의 그 국제출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7 조 서명과 언어

(1)(a) 이 조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원본 1 부에 서명한다.

(b) 사무총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들과 협의한 후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총회가 지정하는 기타 언어로 된 공식 조약문을 작성한다.

(2) 이 조약은 1970 년 12 월 31 일까지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68 조 기탁 기능

(1) 이 조약의 원본은 서명을 위한 개방이 종료된 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사무총장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 정부 및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타 국가의 정부에게 이 조약 및 이 조약에 부속된 조약규칙의 사본 2 부를 인증하여 송부한다.

- (3) 사무총장은 이 조약을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한다.
- (4)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의 정부 및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타 국가의 정부에게 이 조약 및 조약규칙의 개정본의 사본 2부를 인증하여 송부한다.

제 69 조 통지

사무총장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 (i) 제 62 조에 따른 서명
- (ii) 제 62 조에 따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 (iii) 이 조약의 발효일 및 제 63 조(3)에 따라 제 2 장의 적용이 시작되는 일자
- (iv) 제 64 조(1) 내지 (5)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
- (v) 제 64 조(6)(b)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의 철회
- (vi) 제 66 조에 따라 접수된 폐기
- (vii) 제 31 조(4)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

각주

*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된 목차와 편집자 주는 조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1 편집자 주: 2002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30개월의 기한은 적용되는 국내법이 이와 상충함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지정관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20개월의 기한은 변경된 조약 제 22 조(1)이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계속 상충하는 지정관청에 대하여는 상기 일자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그러한 상충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이 받은 정보는 공보 및 WIPO 웹사이트(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에 공개된다.

2 3 편집자 주: 1980년부터 동맹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2년 단위로 되어 있다.

4 편집자 주: 조약 제 64 조(1) 내지 (5)에 따라 이루어진 유보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이 받은 정보는 공보 및 WIPO 웹사이트(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에 공개된다.

특허협력조약
